

2020년 4월 2일 목요일

건강 보험 관련인께,

COVID-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 Essential Plan, Child Health Plus, Qualified Health 보험료 납부와 유예 기간 규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없는 Medicaid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OVID-19 비상사태 중 NY State of Health의 목적은 현재 보험이 없는 사람을 돕고 기존의 가입자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 **Essential Plan**

건강 보험에서는 부서의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Essential Plan에 대한 월 \$20의 보험료 분담금을 내지 못한 가입자를 제명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공지는 행정 명령 202번에 따라 선포된 주 재난 비상사태가 끝나기 전이나 끝날 때 제공될 예정입니다. Essential Plan 보험료는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FPL) 150~200%에 해당하는 가구에 적용되며 이는 EP 1(NY SSL § 369-gg(5)(a)(i))에 해당합니다.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건강 보험은 보험료 분담금을 계속해서 월 기준으로 수납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이 기간 가입자는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보장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에서는 보험료의 주/연방 부담금에 대해 보험을 계속 변제할 것입니다.

Essential Plan + Vision 및 Dental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Vision + Dental 금액에 대한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건강 보험에서 재량에 따라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건강 보험이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Child Health Plus**

#### 보조금 대상자

2020년 3월 31일 Gabrielle Armenia의 건강 보험 서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강 보험은 긴급 사태 기간 CHPlus 프로그램의 월 보험료 분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아동을 제명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건강 보험은 가족 보험료 분담금을 계속 월 기준으로 수납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이 기간 아동은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보장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에서는 보험료의 주/연방 부담금에 대해 보험을 계속 변제할 것입니다.

#### 전체 보험료 납입자

보험은 전체 보험료 카테고리에 있는 아동에게 유예 기간을 필수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납입자에 대한 조치는 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서 발행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건강 보험이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Qualified Health Plans**

#### 보험료 세금 공제 대상자

Centers for Medicare 및 Medicaid Services 에서 2020 년 3 월 24 일 발행한 지침인 [COVID-19 국가 비상사태 관련 납입 및 유예 기간 유연성](#)에 따라, Qualified Health Plan 발행인은 연방 보험료 세금 공제를 받는 가입자의 월 보험료 납입액 납입 기한을 30 일 연장해야 합니다. CMS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납입 기한이 연장되면 유예 기간의 시작일이 늦춰집니다. 발행인은 반드시 연장 기간의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CMS 는 보험료 세금 공제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3 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시작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45 CFR 156.270(d)]. 이는 발행인이 첫 달 동안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청구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둘째 및 셋째 달에는 청구 금액을 보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3 개월간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둘째 및 셋째 달에 받은 세금 공제가 반환됩니다.

예를 들어, 발행인은 4 월 보장 내역의 지급 기한을 4 월 1 일에서 5 월 1 일로 연장합니다. 이전에 완불했던 소비자가 4 월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아직 체납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인에게는 유예 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청구 및 연방 세금 공제가 연장된 달(4 월)에 대해 지급됩니다. 해당자가 계속해서 미납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5 월에 유예 기간이 시작되며 종료 시한은 5 월 31 일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 유예 기간의 첫 달(5 월) 동안 발행인은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청구 금액을 지급하고 유예 기간의 둘째 및 셋째(6 월 및 7 월) 달에는 청구 내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공업체는 6 월 및 7 월 청구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발행인은 4 월 및 5 월에 연방 선지급 세금 공제를 받게 되며, 소비자가 5 월 31 일 자로 보험을 종료하는 경우, 발행인은 6 월 및 7 월 세금 공제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전체 보험료 납입자

보험은 전체 보험료 카테고리에 있는 가입자에게 유예 기간을 필수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납입자에 대한 조치는 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에서 발행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건강 보험이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New York State 보험법은 같은 등급에 있는 개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합니다(NY Insurance Law 4224(b)). COVID-19 긴급 상황 동안 유예 기간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혜택을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 합니다(예: 세금 공제 자격에 해당하는 모든 Qualified Health Plans 가입자 또는 Qualified Health Plans 가입자, 모든 CHPlus 보조금 지급 가입자 또는 모든 CHPlus 가입자).



Qualified Health Plan 및 CHPlus 전체 보험료 및 Qualified Health Plan 보험료 세금 공제 가입자에 대한 발행인 커뮤니케이션에는 가입자가 미납된 보험료를 적용되는 유예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하여 보험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자가 건강보험 공급업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더 낮은 금액의 보험료 분담금의 보조금 지급 자격에 해당하거나 잠재적으로 전체 보조금 지급 보장 자격을 받을만한 환경의 변화가 가입자에게 발생한 경우, NY State of Health 신청서를 업데이트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건강 보험 인력은 필요한 경우, 이 과정에 있어 가족을 도와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제 이메일([donna.frescatore@health.ny.gov](mailto:donna.frescatore@health.ny.gov))이나 Danielle Holahan(212-417-4991 또는 [danielle.holahan@health.ny.gov](mailto:danielle.holahan@health.ny.gov)), Margaret Middleton(518-473-9635 또는 [Margaret.middleton@health.ny.gov](mailto:Margaret.middleton@health.ny.gov)), Gabrielle Armenia(518-473-0566 또는 [gabrielle.armenia@health.ny.gov](mailto:gabrielle.armenia@health.ny.gov)) 또는 연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onna Frescatore  
NY State of Health 행정 책임자  
겸  
New York State Medicaid Director